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

2010. 5

기 획 재 정 부

■ ■ 목 차 ■ ■

I. 추진배경	1
가. 국가계약제도의 운영현황	1
나. 현행 국가계약제도의 문제점	2
참고. 2009년도 계약제도 개선 경과	4
II.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방향	5
III. 전략과제별 주요 추진과제	6
IV. 향후 추진일정	16
<별첨> 2010년 국가계약제도개편 추진과제 목록 ..	18

1. 국가계약제도 개편 추진 배경

가. 국가계약제도 운영 현황

- 국가계약제도는 재정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국가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국가계약은 재정집행규모 및 제도 등의 확산효과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
- 국가, 지자체, 공기업의 계약 규모는 '09년도 기준으로 122조원(GDP의 약11.5%) 수준

(단위 : 조원)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 GDP 규모(A)	865.2	908.7	975.0	1,026.5	1,063.1
· 정부계약규모(B)	83.2	83.8	92.0	100.9	122.2
국가 및 지자체	53.5	51.3	52.1	61.1	71.2
공공기관 등	29.7	32.5	39.9	39.8	51.0
비중(B/A, %)	9.6	9.2	9.4	9.8	11.5

* 자료 : 중기청 「공공기관 구매실적(물품, 용역, 공사 포함)」

- 특히 건설시장의 경우 공공부문의 규모가 '09년 58.5조원으로 국내건설시장 118.7조원의 49% 수준
 - 건설산업은 건설투자액, 취업자 수 등을 고려할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
 - * GDP 대비 건설투자액('09년) : 18.4%
 - * 건설업 취업자수('09.12월) 172만명(전체 취업자의 7.3%)

나. 현행 국가계약제도의 문제점

- 재정사업비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
 - 부실 원가계산 등으로 인한 사업비 과대산정 가능성
 - 장기계속공사시 연도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에 대한 관리 미흡
- 입·낙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부족
 - 입찰담합, 로비가능성 등으로 인한 부적격업체 선정 우려
 - * 서울시 지하철7호선 701~706공구 6개업체간 입찰담합
 - * 파주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관련 뇌물제공 사례
 -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및 내용 등에 대한 적정성심사 제도 미비
- 주요 정책목적과의 체계적인 연계 부족
 - 그동안의 계약제도 개선은 효율적 재정운용 등에 주력하여 다른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지원 등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 미흡

□ 주요 입·낙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미흡

-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수 저조, 가격경쟁미흡 등으로 인해 높은 비용으로 사업 추진

< 참고 : 턴키와 일반공사 낙찰률 비교(09년, 조달청) >

	턴 키	일반공사(최저가낙찰제)
건 수	98	161
평균입찰참가자수	2.37	63
평균낙찰률	92.86%	71%

* 낙찰률 : 낙찰금액/예정가격(단, 턴키의 경우 낙찰금액/총사업비)

-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회 입찰참가자들의 서류 위·변조, 발주기관의 형식적 심사 등으로 실효성 부족

□ 국가계약제도 운영의 관리체계 미흡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특례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예외규정 과다
 - * 총 31개 개별법령에서 수의계약사유(23), 입찰참가자격제한(4), 낙찰자결정방법(2), 기타내용(2) 등에 대한 특례 규정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의 계약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 발주기관별 정보처리장치가 연계되지 않는 등 정부부문에 대한 통합적 정보관리 곤란

⇒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 2010년 국가계약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국가경제운용의 경쟁력 강화 필요

참고 2009년도 계약제도 개선 경과

- '09년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추진
 - 3차례의 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편안 마련
 - * '10.5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예정

□ '09년 제도개편 주요내용

- ①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 *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안(순수내역입찰제)도 시범 실시
- ② 기술제안입찰제도 확대(행복·혁신도시 공사 → 모든 공사)
 - * 공기단축방안, 사업비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도록 하는 입찰방법
- ③ 수의계약제도를 정비하여 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농협 등)와의 수의계약을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4년간 유예후, 2년간 축소)
- ④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자율화
 - * PQ실시여부 및 심사항목, 평가기준 등을 발주기관에 자율 부여
- 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조정 및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10.1월이후에도 계속해서 76억미만(당초 50억 미만)공사에 적용, 5천만원이하 계약보증금 면제(당초 3천만원)
- ⑥ 건설업계 동반부실을 유발하는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 * 턴키·대안입찰 : '10년부터 폐지, 300억 미만 공사 : '11년부터 폐지
- ⑦ 최저가낙찰제공사 대상금액 확대(100억원이상, 2012부터 시행)등

II.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방향

-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전략목표 하에 5개의 주요 전략과제 선정

<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전략목표 및 과제 >



< 주요 전략과제 >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낭비 소지 최소화 •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관리 강화
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계약제 도입 • 부정당업자제재 실효성 제고 • 수의계약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중소기업지원 등 정책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참여기업 등에 대한 계약제도상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중소기업체 포함 공동수급체 우대 등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계약운영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턴키공사제도 개선 •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 개선
국가계약제도 관리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 관련 개별법령 사전심사제도 도입 • 국가계약 관련 통계 등 실적 관리 체계화

III. 전략과제별 주요 추진과제

1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집행

가. 원가계산용역기관 관리 강화

-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 및 사전심사 강화
-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대형화·전문화 유도 및 난립 방지
 - 등록제 실시 및 매년 자격 요건을 심사
- 원가계산결과에 대한 감리 실시 및 책임성 제고방안 마련
- 조달청, 협회 등을 통해 원가계산결과 부실여부 확인 및 제재
 - 부실원가계산에 대한 책임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 법령에 용역기관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요건 확인, 감리, 교육업무 등을 위임

구분	현행	개선방향
자격요건 및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소지자 고용 등 전문성과 관계없는 자격요건 • 발주기관에서 입찰시마다 개별적으로 자격요건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계산용역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요건 신설 • 등록제 실시 등 원가계산 용역기관 통합관리방안 검토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제도 및 책임확보방안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실시, 부실원가계산에 대한 책임확보 방안 마련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없음 • 회원사의 자격요건 심사 업무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마련 • 자격요건확인, 감리, 교육 업무 등을 위임

- (조치사항) 시행령 및 회계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

나. 예정가격 제비율 현실화

- **공무원가 산정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등에 적용되는 **제비율을 현실화**하여 정확한 예정가격 작성 지원
 - 그간의 공사규모 확대 등을 감안하여 구분기준* 및 제비율 (간접노무비율, 일반관리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
 - * 공사규모(3단계) : 5억원미만, 5억원~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공사기간(3단계) :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현 행	개선방향
· 공사규모 및 공사기간 등 예정 가격작성 관련 구분기준이 '89년 설정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음	· 그간의 공사규모 확대 등을 감안, 구분기준 및 제비율 조정

□ **(조치사항) 회계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

【참고 :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공무원가계산은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로 구분하여 직접 계상(물량 x 단위당 가격)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는 비율적용방식으로 산출가능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 일반관리비 = 공무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x 일반관리비율

다. 장기계속공사제도 관리 강화

-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시부터 공사이행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
 - 국회심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사업의 **계약이 체결되도록 점검 및 관리**
 -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연도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 않도록 관리 강화**
 - 장기계속사업에 대해 차수별 공사완료시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납부 등 하자보수 관리 강화**
- 전년도 계약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기계약이 체결되도록 관리**
 - 전년도계약 공사이행기간 중 공사의 완성도,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심사·평가하여 차기계약체결 여부 검토**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등 **불공정행위 및 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기공사 계약체결 제한 검토**

□ **(조치사항) 회계예규 개정**

2 계약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마련

청렴계약제 도입

- 청렴계약의 법적근거 마련 및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의무화 등 추진(국가계약법 개정)
- 청렴계약의 체결절차 및 내용, 계약해제·해지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현 행	개선방향
· 발주기관(조달청 등)별로 자율적으로 청렴계약제를 도입·운영	· 청렴계약 체결 의무화 · 청렴계약 체결절차 및 내용, 위반시 제재 등 세부사항 규정

- (조치사항)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제고

- 지자체, 공기업 입찰에서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해 국가기관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도 제한
-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의 G2B 등록대상 확대

현 행	개선방향
· 지자체, 공기업 입찰에서 뇌물제공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도 국가기관 입찰에는 참여가능	· 지자체, 공기업 입찰에서 뇌물제공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경우 국가기관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도 제한
· 14개 공기업·준정부기관만 부정당업자 제재시 G2B 등록	·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

- (조치사항) 시행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나. 수의계약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

-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금액 및 내용의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검토

-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및 계약 상대자선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장치 마련

* 필요시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에 보고

현 행	개선방향
· 수의계약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심사제도 부재	· 수의계약에 대한 심사제도 도입검토

- (조치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수의계약제도 정책방향 전환 필요성】

- (의의) 국가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
 - 수의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엄격히 사유 제한
- (현황) 그동안 사회·정책적 목적(중소기업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 사유가 확대
 - '09년 다수 수의계약 사유를 제한경쟁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정비를 추진(시행령 개정 중)
- (전환 필요성) 기존의 수의계약사유 타당성 검토 및 폐지 논의에서 수의계약제도 운영방식의 개선으로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
 - 수의계약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3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목표 달성

◇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일자리 창출 및 녹색성장 지원 등을 위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고용확대기업에 대한 계약제도상 인센티브 부여
 - 계약단계별로 신규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방안 검토
- (조치사항) 회계예규 개정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방안(예) >

계약 단계	인센티브 세부내용
낙찰자결정단계	· PQ·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 가점부여
계약이행단계	· 계약보증금 감면 · 선금지급 확대
계약해지단계	· 계약의 해제·해지 유예

나.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국가계약제도 운영을 통한 녹색성장 지원 추진
 - 녹색성장 참여기업에 대한 계약제도상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조치사항) 회계예규 개정

【참고 : 조달청 녹색구매 활성화 계획('10.1월)】

- ① 공공기관의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최소 녹색기준 제정 추진
- ② 에너지 저효율제품 공공입찰참가제한
- ③ 녹색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수의계약 가능)
- ④ 적격심사시 녹색기술·제품에 가점 부여

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한 우대제도

- 중소기업 포함 공동수급체에 대한 계약제도상 다각적인 지원 방안 검토

현 행	개선방향
· 소기업이 1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0.5점 가점 부여(조달청)	· 적격심사 가점부여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조치사항) 회계예규 개정

중소기업 구성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 도입 후속조치

-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만 참여하는 경쟁입찰제도 도입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만 참여하도록 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수주기회 확대
- 제도실시를 위한 제반사항을 시행령 등에 규정
 - 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수급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현 행	개선방향
신설	· 소기업·소상공인의 최소참여지분비율 설정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인 이상 포함 의무화(시행령에 규정)
신설	·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소기업자) 수에 따른 우대기준 마련

- (조치사항)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및 회계예규 신설

4 |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계약운영의 효율성 제고

가. 턴키공사제도 개선

- 턴키입찰담합방지, 가격경쟁활성화 및 입찰참가자수 확대 등 다각적 개선방안 마련
 - 설계점수 차등 축소, 설계적합최저가방식 활성화 등 가격경쟁활성화 방안 검토
 -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합리화 등 입찰참가자수 확대 방안 검토
- 턴키발주에 대한 타당성 심사제도 개선 등을 통해 턴키공사 남발가능성 해소
 - 턴키발주가 효율적인 공사에 적용되도록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제도 등을 개선
- (조치사항) 국토부, 공정위,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실무T/F 구성
 - 회계예규, 국토부 훈령(대형공사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등 개정

현 행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자간 가격차이가 크지 않아 담합의혹 제기 · 높은 낙찰률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담합방지방안 마련 · 가격경쟁활성화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수는 대부분 2개사(72.5%)로 입찰참가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 턴키입찰참가 활성화 방안 마련

나.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 개선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내실화 방안 마련
 - 심사서류 간소화를 통해 발주기관 심사부담을 절감하는 등 저가심의과정의 효율성 제고
 - 입찰서류를 객관화하여 입찰참가자들의 위·변조행위 방지
- 저가심의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계량지표 마련 등을 검토하여 심사과정의 객관성 강화
 - 입찰금액적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공개범위 확대 및 사후보고(debriefing)제도 도입 검토
- 절감사유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절감사유서에 관한 내용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하는 등 발주기관 및 감리업체의 인식제고 방안 마련

현 행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들의 입찰서류 위·변조행위 만연 · 절감사유서 분량이 과다하여 발주기관은 형식적으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서류의 검증가능성 강화 · 심사부담 절감 등을 통해 심사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 심사위원회에 의한 자의적 심사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검토 · 심의결과 공개범위 확대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시 절감사유서를 반영하지 않아 과다증액 사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감사유서 관련 내용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하는 등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조치사항) 회계예규(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기준) 개정

5 **국가계약제도 관리체계 정비**

가. 국가계약 관련 개별법령 사전심사제도 도입

- 개별법령에서 국가계약법과 달리 내용을 정할 경우
 - 개별법령의 **입법예고** 전에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함

현 행	개선방향
· 국가계약에 관한 개별법령 제정시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부재	·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 **(조치사항)**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나. 국가계약 통계관리 체계 정비

- 국가계약규모, 종류별 실적** 등을 관리하기 위한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가계약 관련정보 체계적 관리
 - 발주기관별 **정보처리장치 연계** 추진
 - *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DB와 연계 통합

현 행	개선방향
· 조달청 위탁계약실적만 조달청에서 집계 · 중소기업청에서 각 기관별 총구매 실적을 제출받아 집계	· 조달청에서 국가기관 전체 계약 실적 집계 · 총계약금액뿐만 아니라 예정가격, 입찰방법 등 계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 (조치사항)** 시스템 개선을 위한 내부조치

IV. 향후 추진일정

- 실무협의를 필요한 과제에 대한 실무T/F 구성(6월중)
- 국가계약제도 과제별 개선방안 마련 및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 심의(6월 ~ 11월)
 - 제1차 회계예규 개정(7월)
 - 시행령 개정 추진 및 제2차 회계예규 개정(9월 ~ 10월)
 - 제3차 회계예규 개정(11월 ~ 12월)
-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9월)
 -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보완

세부추진과제 실천계획(Action Plan)

< 별첨 >

2010년 국가계약제도개편 추진과제 목록

세부추진과제	세부일정
1. 원가계산용역기관 관리 강화	- 10.4월 : 제1차 회계예규 개정 완료 - 10.7월 : 제2차 회계예규 개정 - 10.9월 : 시행령 개정
2. 예정가격 제비율 현실화	- 10.12월 : 회계예규 개정
3. 장기계속계약제도 관리 강화	- 10.9월 : 회계예규 개정
4. 청렴계약제 도입	- 10.6월 : 청렴계약제도 법적근거 마련 - 10.9월 : 시행령 개정 추진
5.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제고	- 10.9월 : 시행령 및 계약사무규칙 개정 추진
6. 수의계약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	- 10.9월 : 시행령 개정 추진
7. 고용확대기업에 대한 계약제도상 인센티브 마련	- 10.7월 : 회계예규 개정
8. 녹색성장 지원 방안 마련	- 10.6월~8월 : 연구용역 추진 - 10.9월~10월 : 연구용역 결과 검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9. 중소기업 포함 공동수급체 우대제도	- 10.7월~8월 : 조달청과 실무협의 - 10.9월 : 회계예규 개정
10. 중소기업 구성 공동수급체 경쟁입찰제도 도입 후속조치	- 10.7월~8월 :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및 조달청 예규 제정
11. 턴키공사제도 개선	- 10.4월 : 실무T/F 구성 - 10.7월 : 제1차 개선방안 마련 - 10.9월 : 제2차 개선방안 마련
12.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 개선	- 10.6월 : 조달청 등 관계기관 실무협의 - 10.7월 : 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 10.12월 : 회계예규 개정
13. 국가계약 관련 개별법령 사전 심의제도 도입	- 10.5월 : 훈령 제정
14. 국가계약 통계관리 체계정비	- 10.5월~8월 : 조달청과 실무협의 - 10.9월 : 시스템 개선 추진

과제명	세부과제	조치사항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	1. 원가계산용역기관 관리 강화	시행령 회계예규 개정
	2. 예정가격 제비율 현실화	회계예규 개정
	3.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관리 강화	회계예규 개정
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4. 청렴계약제 도입	법률, 시행령 개정
	5.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제고	시행령 개정 계약사무규칙 개정
	6. 수의계약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	시행령 개정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목표 달성	7. 고용확대기업에 대한 계약제도상 인센티브 부여	회계예규 개정
	8. 녹색성장 지원 방안 마련	회계예규 개정
	9. 중소기업 포함 공동수급체 우대제도	회계예규 개정
	10. 중소기업 구성 공동수급체 경쟁입찰제도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회계예규 제정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계약운영의 효율성 제고	11. 턴키공사제도 개선	회계예규 개정 국토부훈령 개정
	12.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 개선	회계예규 개정
국가계약제도 관리체계 정비	13. 국가계약 관련 개별법령 사전심사제도 도입	훈령 제정
	14. 국가계약 통계관리 체계정비	내부조치